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